



2021학년도 청렴에 따른 불법 찬조금 근절 연수 자료

1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 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2 불법찬조금 모금과 촌지 수수의 폐해

- 가.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 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 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위법성에 대한 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적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대한 수수자와 제공사 모두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
- 라. 불법적인 모금, 각출 시 불투명한 모금과정과 집행으로 학부모 단체 등의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
- 마. 불법찬조금 조성은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우며 발생 시 피해보상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바.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3 정상적인 학교발전기금 조성 방법

-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비, 교재교구구입비, 도서구입비, 학교체육활동비, 학예활동비, 학생복지비, 학생자치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교직원 식대, 교직원 체육복 구입비 등 사용 불가
- 다.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그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 비교

구분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비고
구성 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되는 행위	
구성 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기부·조성 •홍보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모금 조성행위(일정액 할당, 납부서 일괄배부, 개별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한 강요 등)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사용 목적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법령에 의하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행위 -교직원의 각종수당(인건비), 여비,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 -각종협의회비, 간담회비, 선물비, 화환등	

4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 가.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다.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라.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마.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바.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4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간식 등 금지 안내

1. **불법 찬조금 근절**(불법찬조금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행시행령 상에 정해진 학교 발전 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2. **촌지(선물) 수수 근절**(스승의 날, 명절 등을 이유로 정으로 드린다는 선물도 해당)
3. **간식 반입 금지**(전교 임원, 학급 임원 선출 직후, 학생 생일, 어린이날, 체육대회 연습이나 체육대회 날 제공되는 간식이나 음료, 현장학습 때 등 모두 해당)

우리 학교에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불법찬조금을 모금할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님 및 학교운영위원님께서도 불법찬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